

# 국내외 주요환경 선언문

## I. 국내의 주요 환경선언

### 1. 環境保全을 위한 國家宣言

#### 〈前文〉

자연은 人間存在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자제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倫理規範이다.

이를 어기는 사람의 행위와 무관심이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와 지구의 존속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60년대 이래 급속히 진전되어온 産業化와 都市化로 우리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지금 적절히 대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환경은 더욱 오염되어 품위있고 건강한 삶의 유지는 물론 지속적인 국가발전도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하다.

환경오염이 물고을 재앙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슬기를 총집결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환경보전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왔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 환경을 보전하여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오늘의 세대와 미래의 후손들까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의 환경보전 기본원칙을 겨레의 의지로 선언한다.

#### 〈環境保全 기본원칙〉

1.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살기좋은 자연환경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며 안전하면서도 생산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과 정부는 보다 나은 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모든 정책수립이나 개발활동은 그 결정과 시행에 앞서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발은 環境保全과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3. 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을 분석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계획과 이미 발생된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종합적인 환경행정 체제 하에 관계부처간의 효과적인 상호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 우선의 시각에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이미 훼손된 자연자원과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제도를 확립하고 情報와 資料를 최대한 공개하여야 한다.
6. 기업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을 때에 기업인은 즉각 이를 해결하는 노력

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실천이 企業倫理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7. 産業活動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의 하나는 자원을 절약하는데 있다. 따라서 생산으로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자원이 절약되는 형태로 하루바삐 개편하여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産業競爭力 강화에도 필요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8. 정부와 기업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결과가 실제에 응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이 개발된 모든 과학기술은 그 실용에 앞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9. 민간단체와 언론기관은 공정한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10. 국민각자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 쓰는 건전한 消費風土를 확립해야 하며 무관심으로 인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진지하게 성찰하여야 한다.
11. 우리모두가 지구촌의 일원이다.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펼쳐는 노력에 우리는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2. 우리는 이제 물질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정신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개념과 마음가짐을 정착시키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13. 이 같은 제반 노력을 우리의 윤리규범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서는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환경교육은 학교교육에서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평생교육을 통하여 환경보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합심협력하여야 한다.
14. 앞에서 천명한 環境保全과 창조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국가는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고 中·長期 綜合對策의 수립과 실천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이 선언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자자손손 폐적한 환경에서 繁榮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기업인 환경선언

\* 1992. 5. 경제5단체(全經聯, 大韓商議, 貿協, 中企協, 經總) 공동체책

지금 인류는 깨끗한 환경을 삶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세계공동의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은 세계경제 발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각 나라의 당면한 사회적·경제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과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快適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인류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대기과 수질, 토양과 해양에 공해오염이 확산되어 인간의 생존마저 어렵게 하는 상태로까지 진전되고 있어 대내적으로는 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업이 다함께, 對外的으로는 국제적 협력을 통한 地球次元的인 환경대책이 요청되고 있으며, 특히 이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 기업과 기업인은 그간 우리의 경제개발과정에서 환경오염 방지와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에 앞서 생산시설 확충 등에 더 注力함으로써 昨今の 환경문제를 야기시켜 온 데 대해 일단의 책임을 겸허히 自省하고, 기업의 경영목표와 이념을 다시 가다듬어 앞으로 모든 기업활동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환경보전을 기업의 주요임무의 하나로 수용하여 자연과 인간을 중시하는 기업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자연과 기업과의 공생관계의 유지는 물론 국민과의 신뢰감 구축을 통해서만이 기업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이 가능하며, 또한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려는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인류의 영구적인 밝은 미래를 이룩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환경보전에 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인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강령을 채택하여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 행 동 강 령

### 1. 기업의 인식전환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그 과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노력한다.
- 환경문제가 현존하는 한 생활의 풍요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기업활동의 역점을 환경의 質의 개선에 두도록 한다.
- 환경관리를 경영목표 중 중요항목의 하나로 책정하고 경영의사 결정시 고려하도록 한다.

### 2. 환경관리체제의 개선

- 경영활동과 관련된 각종 환경문제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내에 환경관리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한다.
- 자체 환경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적용결과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증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기업내 환경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기업구성원 모두의 참여의지를 계도한다.

- 관련기관 및 타기업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환경보전대책을 보완·강화해 간다.
- 공해 및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그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적시에 마련하도록 한다.

### 3. 환경영향의 사전 검토

-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에는 환경보전 및 공해방지에 대한 자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공장입지의 선정에서부터 생산설비의 설치, 원자재 및 부품의 구입, 제품 개발, 그리고 제품의 생산·유통 등 기업 활동의 전 단계에 있어서 환경오염의 파과의 예방을 위해 검토와 연구에 충실을 기한다.
- 산업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그 재활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실용화에 노력한다.

### 4. 시설 확충·운영

- 현 시설과 공정에 있어 미흡한 환경보전여건을 보완하는데 노력한다.
- 오염물질 발생의 감량화와 적정처리를 위해 설치한 시설은 관계법규에 따라 성실히 가동하도록 한다.

### 5. 기술개발

- 환경보전을 위해 생산공정의 개선, 新技術 개발을 위한 연구·투자의 확대와 청정기술의 개발에 힘쓴다.
- 低公害製品的의 생산촉진, 廢資源의 이용, 그리고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한다.
- 환경보전에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민간기업의 공동 추진체제를 수립한다.

### 6. 각계와의 협력증진

- 各 경제주체와의 대화를 촉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데 노력한다.
- 환경정책의 실효성과 현실성 제고를 위해 정책입안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의 경험과 의견을 수시로 제공한다.
-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의 적절한 사용, 재자원화 그리고 폐측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한다.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자주적으로 참여한다.

### 7. 국제협력의 증진

-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정보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 개발단계의 차이에서 생기는 의견조정에 있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노력하며, 지구적 규모의 환경·자원·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에 성의있게 참여한다.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의 경우에는 그 대상국의 환경보전에 유의하며 관련된 환경기술 이전에 적극 노력한다.

### 3. 자연보호현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自然과의 調和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自然의 平衡이 상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요인을 배제함으로써 自然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현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
- 2)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 7) 국민 각자가 생활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1978년 10월 5일

### 4. 環境保全 국민생활 수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하였습니

그러나 오늘날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하여 이 강산은 날로 오염되고 우리의 생활환경마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인 이 터전이 온갖 공해로부터 병들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손만대까지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다음 사항을 지켜 나갑시다.

- 1) 물과 전기를 아껴쓰는 습관을 생활화 합시다.
- 2) 합성세제와 1회용 생활용품을 되도록 적게 사용합시다.
- 3) 음식 찌꺼기는 봉지에 싸서 버리고, 쓰고 남은 식용유는 휴지에 묻혀 버립니다.
- 4) 쓰레기는 타는 것, 타지 않는 것, 다시 쓸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 처리합시다.
- 5) 고무, 비닐 등 독한 냄새를 내는 물질을 함부로 태우지 맙시다.
- 6) 자동차 정비를 철저히 하여 매연을 줄입니다.
- 7)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지 않도록 합시다.
- 8) 하천에서 세차를 하거나, 오물을 버리지 맙시다.
- 9) 낚시, 등산시에도 도시락을 이용하고,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옵시다.
- 10) 농약은 알맞게 뿌리고, 페비닐과 빈병은 반드시 거둬서다.
- 11) 풀 한포기, 새 한마리도 우리의 가족처럼 아끼며 보호합시다.

## II. 국제기구의 주요 환경선언

### 1.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 1992. 6.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은 스톡홀름선언을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추구하고 모든 국가와 사회의 주요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汎世界的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또한 지구의 환경및 개발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정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들의 고향인 지구의 통합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 原則1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심의 중심이 된다. 인간은 自然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

#### ○ 原則2

각 국가는 UN 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자국의 환경

및 개발정책에 의하여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한 자국의 관할구역 또는 통제범위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관할범위 외부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다.

#### ○ 原則3

개발의 권리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개발및 환경적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 ○ 原則4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이로부터 분리되어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 ○ 原則5

모든 국가와 모든 국민은 생활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요건인 빈곤의 퇴치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 原則6

개도국, 특히 극빈개도국과 환경적으로 취약한 개도국의 특수상황과 요구는 특별한 우선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과 개발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활동은 모든 나라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 ○ 原則7

각 국가는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완전성을 보존, 보호및 회복시키기 위하여 범세계적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지구의 환경악화에 대한 제각기 다른 책임을 고려하여, 각 국가는 공통된 그러나 差等한 責任을 가진다. 선진국들은 그들의 사회가 지구환경에 끼친 영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및 재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있어서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인식한다.

#### ○ 原則8

지속가능한 개발과 모든 사람을 위한 보다 나은 생활의 質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지속불가능한 生産과 소비패턴을 줄이고 제거하여야 하며 적절한 人口政策을 추구하여야 한다.

#### ○ 原則9

각 국가는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교환을 통하여 과학적

이해를 향상시키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개발, 적응, 전파 그리고 이전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내재적 능력형성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原則10

환경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관련된 모든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진다.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개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유해물질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접근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각 국가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함으로써 공공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피해의 구제와 배상을 포함한 사법 및 행정적 절차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이 제공되어야 한다.

○原則11

각 국가는 효과적인 환경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환경기준, 관리목표, 그리고 우선순위는 이들이 적용되는 환경과 개발의 정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어느 한 국가에서 채택된 기준은 다른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게 경제·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原則12

각 국가는 환경악화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開發을 도모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를 증진시키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환경적 목적을 위한 무역정책수단은 국제무역에 대하여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위장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수입국의 관할지역밖의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는 회피되어야 한다. 국경을 초월하거나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환경적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原則13

각 국가는 환경오염이나 기타 환경위해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내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각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지역내에서의 활동이 자국의 역내에서의 활동이 자국의 관할범위 이외 지역에 초래한 악영향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법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原則14

각 국가는 환경악화를 심각하게 초래하거나 인간의 건강에 위해한 것으로 밝혀진 활동이나 물질을 다른 국가로 재배치 또는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原則15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국가별 능력에 따른 예방적 조치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原則16

국가당국은 汚染者가 원칙적으로 오염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환경비용의 내부적 반영과 경제적 수단의 사용을 증진시키기도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국제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原則17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招來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 국가당국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 평가가 국가적 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한다.

○原則18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환경에 급격한 危害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자연재해나 기타의 긴급사태를 상대방 국가에 즉시 통고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국가를 돕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原則19

각 국가는 국경을 넘어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에 사전에 적시적인 통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단계에서 성실하게 이들 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原則20

여성은 환경관리 및 개발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原則21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고 모두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계 청년들의 독창성, 이상, 그리고 용기와

결집되어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原則22

토착민과 그들의 사회, 그리고 기타의 지역사회는 그들의 지식과 전통적 관행으로 인하여 환경관리와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각 국가는 그들의 존재와 문화및 이익을 인정하고 적절히 지지하여야 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의 효과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原則23

壓制, 지배 및 점령하에 있는 국민의 환경과 자연자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 原則24

전쟁은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파괴한다. 따라서 각 국가는 무력분쟁시 환경의 보호를 규정하는 국제법을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原則25

평화, 개발 및 환경보호는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原則26

국가는 그들의 환경분쟁을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原則27

각 국가와 국민들은 이 선언에 구현된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 있어서의 관련국제법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성실하고 동반자적 정신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2. UN 인간환경선언(1972년)

1972년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유엔 인간환경회의는 인간환경의 보존과 향상에 관한 세계 모든 인류에게 이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계몽하기 위한 공동의 견해와 공통의 원칙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前 文

1) 인간은 그에게 물질적인 자산을 주고 지적, 도덕적, 사회적, 정신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의 창조자인 동시에 형성자이다. 이 지구상 인류의 길고도 우여곡절이

많은 진화는 科學과 技術의 급속한 발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야말로 인류로 하여금 그들의 환경을 변혁시키는데 갖가지 방법과 엄청난 규모의 역량을 습득하게 하였다. 자연 그대로의 인간환경이나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간 환경은 모두 인간의 행복과 기본권의 향유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2) 인간 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전 세계를 통하여 인류의 복지와 경제개발에 갖가지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어느 나라의 국민이든 어느 나라 정부이든 시급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3) 인간은 끊임없이 경험을 살려 발전, 발명, 창조, 발전을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의 인간이 가진 환경개선 능력은 잘만 이용하면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와 개발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 인공적인 해가 증대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수질, 대기, 토양, 생물들 속에서 위험수준에 육박한 오염현상을 볼 수 있으며 생물원의 생태적인 균형을 깨뜨리는 증대하고도 바람직하지 못한 혼란, 다시 채워 넣을 수 없는 각종 자연자원의 파괴와 고갈 그리고 인공 환경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주거 및 운동장 등에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해치는 갖가지 결합들이 증대되고 있음을 본다.

4) 개발도상국들에서 환경문제의 대부분이 개발 부진의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인류가 오늘날에도 굶주리고 입을 것을 못입고 몸하나 숨길 집도 없으며, 교육은 물론 건강도 위생도 도의시된 채 종족만을 유지하기 위해 수준 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것이 우선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 따라서, 이 목적을 위해 이미 공업화된 국가들도 그들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격을 좁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진공업국들의 환경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업화 및 기술의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5) 인간의 자연 증가는 계속 환경보존에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적절한 대책과 방법이 채택될 경우,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人間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사회의 진보를 추진하고 복지를 창조하며, 과학과 기술을 개발하고 힘든 노동을 통해 끊임없이 환경을 바꾸어 온 것이 바로 인간이다. 사회진보와 생산, 그리고 과학 및 기술의 개발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점차 개발하였다.

6) 인류는 이제 역사적 전환점에 이르렀다. 우리 인류는 이제 환경이 주는 중대한 영향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

여 지구상의 어디에서든 행동으로 나설 때가 왔다. 무지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과 복지를 떠맡기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은 엄청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반대로 더 충실한 지식과 더 현명한 행동으로써 대처한다면, 인류는 그의 필요와 소망에 더 잘 부응하는 환경속에서 오늘날의 우리자신은 물론 후손들을 위해 보다 나은 생활을 성취할 수 있다.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윤리적인 생활을 창조해 내기 위한 명백한 지혜가 있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열정적이면서도 냉정한 마음가짐, 강렬하면서도 착실한 실천이다. 자연계에서 인간의 자유를 확보하려면 사람들은 자연과 협조하여 보다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 세대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올 세대들을 위해서 인간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일은 인류의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류의 평화와 전 세계적인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이라는 기존의 기본적인 두가지 목표와 잘 조화시키면서 같이 추구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7) 이 환경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사회 기업체와 기관 및 단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같이 공통의 노력을 공정하게 나누어 가지고 이를 책임있게 감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망된다. 각계각층의 개인과 조직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행동의 총화를 통해 미래의 환경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지방행정기관이나 중앙 정부는 그들의 관할 구역에서 폭넓은 환경대책과 실천에 최대한의 책무를 지게 된다.

또 이분야에서 그들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재원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국제 노력이야말로 절실한 것이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그 범위가 지역적 또는 전 지역적이거나 국제적 영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간의 강력한 노력은 물론, 공동의 이해에 국제기구의 활동이 요망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든 정부와 국민들이 그들 자신의 복리와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쏟아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 인간환경선언(原則)

1) 인간은 품위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속에서 자유, 평등 및 쾌적한 생활조건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현 세대 및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엄숙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종차별, 인종분리, 차별대우, 식민정책 및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억압이나 외세의 지배는 규탄되어야 하며, 반드시 배척되어야 한다.

2) 공기, 물, 토양, 동식물과 특히 자연생태계의 대표적인 것들을 포함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천연자원은 세심한

계획과 관리를 통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재생산 가능성이 있는 주요 자원을 공급하는 지구의 능력은 유지되고 가능한 한 회복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4) 인간은 오늘날 악조건의 중첩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안식처를 보호하고 현명하게 관리할 특별한 책임을 지닌다. 따라서 야생생물을 포함한 자연조건은 경제개발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그 중요성을 감안해야 한다.

5) 재생산이 불가능한 지구의 자원은 훗날의 고갈 위기에 대비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거기에서 생기는 복지를 모든 인류가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6) 환경이 유독물질이나, 기타 물질들, 그리고 열기등을 무해화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서 이를 배출할 경우 자연생태계를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주게 되므로, 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배출이 중지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항하여 정당한 투쟁을 벌이는 것은 지지받아야 한다.

7) 모든 국가들은 인류 보건에 위험을 낳고 해양자원 및 쾌적함을 해치거나 해양의 다른 합리적인 이용을 방해할지도 모를 물질들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경제 및 사회 개발은 인간의 안락한 생활과 안락한 노동환경을 유지하는데 불가결한 것이며, 인간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조건을 지구상에 보호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것이다.

9) 저개발과 자연적인 재난 등의 조건으로 발생한 환경의 결함은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발도상국 자체의 국내적 노력에 대한 기본체정 및 기술 원조를 통한 개발의 촉진으로 최선의 구제를 기할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 이러한 뒷받침은 절실히 요망된다.

10)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물가의 안정 및 생활필수품과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적정선의 수입등이 경제적인 요인과 생태학적인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환경관리에 어쩔 수 없는 기본적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1) 모든 국가의 환경정책은 개발도상국의 현재 및 장래의 개발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결코 이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모든 사람의 보다 나은 생활조건을 달성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또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는 환경대책을 적용함으로써 파생되는 국가간의 경쟁적 악영향에 가능한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2) 환경보존 및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자원의 이용이 가능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처지와 특수한 요구, 그리고 그들의 개발계획속에 환경보호 조치를 넣음으로써 발생되

는 추가비용, 또 환경보호의 목적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도상국이 기술및 재정상의 국제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3) 자원과 환경의 보다 더 합리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는 그들 국가의 개발계획이 국민 복지와 직결되는 환경보호및 개선의 필요성과의 사이에 마찰이 없도록 종합되고 조정된 정책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14)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보호 개선의 필요성 사이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가장 긴요하다.

15) 계획은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대한으로 피하고, 모든 인류에게 사회적, 경제적및 환경상의 혜택을 얻게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획은 식민주의적 및 인종적 지배를 목적으로 한 것일 때에는 폐기되어야 한다.

16) 기본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 관계 정부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구정책은, 인구 증가율이나 인구 밀도가 높아서 환경이나 개발에 악영향을 끼치는 지역, 또 반대로 인구 밀도가 너무 낮아서 환경개선과 개발을 방해하는 지역 어디서에서나 적용되어야 한다.

17) 적당한 국가기관에 환경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그 국가의 환경자원을 계획, 관리, 통제하는 업무를 부하시켜야 한다.

18) 적당한 국가기관에 환경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그 국가의 환경자원을 계획, 관리, 통제하는 업무를 부하시켜야 한다.

19) 경제및 사회개발에 기여하는 과학과 기술은 환경위해를 판정하고 방어하고 규제하는 데는 물론, 여러가지 환경문제의 해결과 인류공통의 이익을 위해 응용되어야 한다.

20)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 성인은 물론이지만,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환경의 보호, 개선에 대한 견해를 가지게 하고, 개인, 기업, 지역사회가 책임있는 행동을 취하게 하는 기반을 밝혀 주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21) 환경문제에 관련된 과학적 연구개발사업은, 물론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진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새로운 과학적인 정보, 경험등의 자유로운 교환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고 조력되어야 한다. 환경기술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더 넓은 선전,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이용되어야 한다.

22) 각국은 유엔및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자기 나라의 자원을 그들 자신의 환경정책에 따라 개발할 주권을 가지게 되어 각국의 관할 또는 통제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의 모든 활동이 타국 또는 자국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난

다른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23) 모든 국가는 오염에 의한 희생자및 그 밖의 자국의 통제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의 활용이 타국의 과리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책임과 보상을 하도록 하는 국제법상의 새 규정을 신설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24) 이와같은 일반적인 원칙들은 국가별로는 다소 비판이 있고 견해를 달리하는 점도 있겠지만, 편견없이 국제사회의 합의로서 받아 들여져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표준이 개발도상국에서는 과중한 사회적 부담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등을 감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25) 환경보호및 개선에 관련된 국제 문제는 대국이든 소국이든 똑같은 토대 위에서 모든 국가가 합동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2개 국가 또는 다수 국가가 상호 조정을 통해 협력하거나, 또 다른 적절한 방법을 쓰는 것은 갖가지 영역에서 행해지는 제반활동 때문에 빛어지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막고 제거하고 줄이고, 강력히 규제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 때에 모든 국가는 상호 주권과 국가 이익을 반드시 존중할 필요가 있다.

26) 각국은 국제기구들이 환경의 보호와 개선을 위해 잘 조정되고 능률적이며 강력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27) 인류및 그의 환경은 핵무기및 다른 모든 대량 파괴수단의 영향에서 구제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핵무기를 제거하고 파괴하는 문제를 관련 기구들은 즉각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세계자연현장

“유엔총회는 1982. 10. 28 모든 인간의 자연에 대한 행위 규범으로서의 세계자연현장을 선포하였다.”

#### 1) 일반원칙

(1) 자연은 존중받아야 하고 자연의 필수적 과정은 손상받지 않아야 한다.

(2) 지구상에 있는 유전인자의 생존능력은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 야생이거나 길들여졌거나 모든 생물의 개체수는 적어도 그들이 생존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한다.

(3) 육지이거나 바다이거나 지구상의 모든 지역은 보전원칙에 따라야 한다. 특수한 지역, 모든 생태계 유형의 대표적인 표본, 그리고 드물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種의 서식처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4) 인간이 이용하고 있는 육지, 해양및 대기자원 뿐만아니



라 생태계와 유기물은 최대의 지속적 생산이 달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로 공존하고 있고 다른 생태계 또는 種의 통합성을 위협하지는 않아야 한다.

(5) 자연은 전쟁 또는 적대적 행위로 인한 파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2) 任務

(6) 인간의 기대는 자연체계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이 현장에 지시된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음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7) 사회적, 경제적 개발활동의 계획수립과 집행에 있어, 자연의 보전이 이들 개발활동의 통합된 일부본임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8) 경제성장, 인구성장 그리고 생활표준의 향상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련인구의 생활과 정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연체계의 장기 용량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용량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9) 지구상의 지역을 다양한 용도에 맞게 배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 지역의 물리적 제약, 생물학적 생산성과 다양성, 그리고 자연경관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10) 자연자원은 낭비되어서는 안되고 규칙에 따라 이 현장에 제시된 원칙에 맞게 신중히 사용되어야 한다.

가. 생물자원은 그들의 재생능력이 초과되도록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토양의 생산성은 그들의 장기적 산출력과 유기적 분해과정을 보호하고 침식 및 기타 다른 모든 형태의 저하를 막는 조치를 통해 유지되고 증가되어야 한다.

다. 물을 포함하여, 한번 써도 완전히 소모되지 않는 자원은 다시 이용되고 재생되어야 한다.

라. 한번 쓰면 완전히 소모되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신중히 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들의 부존량, 그들을 소비하기 위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 가능성, 그리고 그들을 개발하는 것과 자연체계의 기능 수행과의 양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자연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하며, 자연에 대한 중대한 위기를 극소화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기술이 이용되어야 한다. 특히,

가. 자연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나. 자연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듯한 행위는 철저히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행위의 제안자는 기대되는 권익이 자연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능함을 보여주어야 하며, 잠재적인 질의 영향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경우는 그 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

다. 자연을 교란시킬 행위는 그 결과의 평가가 선행되어

야 하며,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는 충분히 사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이들이 수행되면 개발행위의 잠재적 질의 영향을 최소화 시키도록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라. 농업, 목축, 임업 그리고 어업은 그 지역의 자연적 특징과 제약에 적합하게 행해져야 한다.

마. 인간행위로 인해 악화된 지역은 그들의 자연적 잠재력과 조화되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지와 양립되도록 복구되어야 한다.

(12) 오염물질을 자연으로 방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가. 이것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이들 오염물질을 이용가능한 가장 실용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그 근원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핵 방사성 물질과 유독성 폐기물의 방출을 막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3) 자연재해, 해충의 만연, 질병들을 예방하고 규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은 이들 재앙의 원인에 특정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자연에 대한 질의 파급효과를 피해야 한다.

## 3) 執行

(14) 이 현장에 제시된 원칙은 국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법과 실행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15) 자연에 대한 지식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특히 정규교육의 통합된 한 부분으로서의 생태교육을 통하여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

(16) 모든 계획은 특히 그의 필수적 요소중에서도 자연보전을 위한 전략의 형성, 생태계 목록의 작성, 그리고 제안된 정책과 행위가 자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들 모든 요소들은 적절한 수단으로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협의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17) 자연보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금, 계획, 행정조직 등은 준비되어야 한다.

(18)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자연에 대한 지식을 증대시키며, 어떤 종류의 제약에 의해서도 피해받지 않고 그러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19) 자연의 과정, 생태계, 그리고 종의 현황은 긴밀히 측정되어서 악화와 위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하고, 적기에 관여할 수 있게 하고 보전정책과 방법의 평가를 촉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0) 자연에 피해를 주는 군사활동을 피해야 한다.

(21) 국가, 그리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른 공공기관, 국제기구, 개인, 집단 그리고 사회들은,

가. 정보교환과 협의를 포함한 공동의 활동과 기타 적절한 행동을 통하여 자연을 보전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나. 자연에 대한 질의 효과를 평가하는 합의된 방법론 뿐만 아니라 이런 효과를 가져올 제품과 제조과정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다. 자연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적용 가능한 국제적인 법적 규정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라. 각국의 관할 또는 규제 범위내에서의 행위가 다른 국가내에 있는 또는 국가 관할권 밖에 있는 지역의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국가 관할권 밖에 있는 자연을 보전하여야 한다.

(22) 자연자원에 대한 각국의 주권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각국은 국내의 적정기관을 통하여 그리고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이 현장의 규정을 실행하여야 한다.

(23) 모든 개인은 각국의 입법에 따라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들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정책의 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그들의 환경이 피해를 입거나 악화되었을 때는 복구수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4) 각 개인은 이 현장의 규정에 따라 행동할 임무가 있다. 즉,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개인은 이 현장의 목적과 필요사항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ICC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인 현장-環境管理의 原則

오늘날 환경보호는 모든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는 1987년도에 「우리 共同의 未來」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함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ICC는 전세계 기업의 환경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계 대표로 구성된 특별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인 현장」을 작성했다. 이 현장은 지속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기업으로 볼 때 중요한 16개의 환경관리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현장은 기업이 환경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포괄적인 방법으로 완수토록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이 현장은 제2차 世界産業環境管理會議(WICEM, 1991. 4월/로테르담)에서 공식 발표되었다.

##### (序言)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미래의 세대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대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을 요구한다. 경제성장은

환경보호가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인류의 여타 목표와 조화를 이룬 환경보호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반면에 능력있고 활력적이며 능동적일 뿐만 아니라 수익력을 갖춘 기업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관리직, 기술직 및 재정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집단이다. 기업인 주도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시장경제체제는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계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문제에 있어서 상충적인 것이 아닌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공감한다.

시장의 원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2천년대에 세계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도전중의 하나이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우리 共同의 未來」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도전을 천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계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기업계 지도자들은 기업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업종별 또는 종합적인 경제단체를 통해 다양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하게 하고 환경관리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ICC는 기업과 단체들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 것과 이러한 원칙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표명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 현장의 목적은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환경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그러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경영방식을 정비함과 아울러 그 진행상황을 측정하며 이를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적절히 보고하도록 하는데 있다.

##### (原則)

#### 1. 회사의 우선목표

환경관리를 회사의 최우선 목표중의 하나로 또한 지속적인 성장의 주요 결정요소로 인식하고, 기업활동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건전한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관행을 설립한다.

#### 2. 경영에의 통합

제반 경영분야에서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 및 관행을 기업체에 완전히 통합시킨다.

#### 3. 개선의 과정

기술발전, 과학적인 지식, 소비자의 욕구 및 지역공동체의 기대를 고려하고 법률적인 규정을 시발점으로 하여 기업

의 정책, 프로그램 및 환경관리 실적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국제적으로 동일한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 4. 종업원 교육

종업원이 환경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동기유발을 시킨다.

#### 5. 사전평가

신규활동 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특정시설 폐기나 특정지역을 방치하기 전에 환경적인 영향을 평가한다.

#### 6. 제품 및 용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으며, 원 사용목적상 안전성이 고려되고,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활용에서 효율적이면서 재생, 재활용 또는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보급한다.

#### 7. 顧客에 대한 통화

고객, 판매자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된 물품의 안전한 사용, 운반, 저장 및 처리에 관해 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서비스부문에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한다.

#### 8. 시설 및 영업활동

효율적인 에너지 및 원재료의 사용,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의 지속적인 사용, 환경상의 악영향과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그리고 잔여폐기물의 책임있는 처리를 고려하여 시설을 개발·고안·활용·가동한다.

#### 9. 연구

기업활동과 관련된 원재료, 제품, 공정, 분출물질 및 쓰레기가 미치는 환경상의 악영향과 그러한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수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한다.

#### 10. 예방적인 조치

심각하거나 회복시킬 수 없는 환경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사용을 과학기술적 지식과 부합되도록 개조한다.

#### 11. 계약자와 공급자

기업의 활동에 대항하는 계약자가 이러한 원칙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관행이 기업의 관행과 일치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한다. 또한 공

급자들이 이러한 원칙을 보다 폭넓게 채택하도록 권장한다.

#### 12. 비상사태의 준비

상당한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 긴급사태 대비기관·관련당국·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타국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한 비상사태 준비계획을 개발 유지한다.

#### 13. 기술이전

산업 및 공공분야 전체에 대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에 기여한다.

#### 14. 공동노력에 기여

환경에 관한 이해증진과 환경보호를 촉진시키기 위한 공공정책의 개발과 기업·정부·정부간의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및 교육계획 개발에 기여한다.

#### 15. 우려사항에 대한 공개성의 유지

종업원 또는 일반 대중에 대한 공개성(Openness)을 유지하고 대화를 촉진하여 기업활동, 제품, 쓰레기 또는 서비스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해악과 영향에 대한 이들의 우려사항을 미리 예견하고 이에 대응한다.

#### 16. 준수 및 보고

환경관리 실적을 측정하고, 기업에 요구되는 사항의 준수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감사 및 평가를 하며, 주기적으로 이사회, 주주, 종업원, 관계당국 및 일반대중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 5. UN 환경특별위원회의 「東京宣言」

UN 특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87년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동경항구의 프린스호텔에서 제8회 최종회담을 개최하고 동경선언을 발표했다.

1982년 UNEP 관리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일본의 제창에 의해 83년 가을, UN 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된 동 위원회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위기적 문제를 고찰하고 보다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위원회는 21개국 대표를 위원으로 7회에 걸쳐 회의를 세계 각지에서 청문회(Hearing) 형식으로 진행하여 이번 8회째 최종회의를 열게 되었다.

이번 회의는 전체총괄과 최종보고서를 정리하여 4월에 런던에서 UN에 보고되었다. 27일에 있는 폐회식에서는 프랜트란트 위원장을 대신하여 베리트 부위원장님이 기조강연을 한 후, 위원회의 결말로 「東京宣言」을 발표했다.

이 「동경선언」은 최종보고서의 선구로 보여지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해야 할 방향에 대한 강한 원칙을 만들어 낸 것으로 의의가 깊다고 생각되어진다.

단지 위원회 자체가 문제의 지적으로만 그치고 해결의 구체적인 행동을 시행하기 위해, 최종보고서가 정리된 후, 각국 level에서 어느 정도 실증되어 시행하는가는 문제가 될 것이다.

## 東京 宣言

‘UN 환경특별위원회’는 UN 총회에 의해 독립기관으로서 1984년에 설립되어 다음과 같은 임무를 한다.

- a) 환경과 개발에 관한 주요문제를 재검토하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 혁신적, 구체적, 현실적인 행동제언을 할 것.
- b)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함과 함께 현재의 양식이나 관행을 탈피하고, 필요로 한 개혁을 향하여 정책이나 사회의 동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노력의 형태를 검토하고 제언하는 것.
- c) 개인, 지원조직, 경제계, 연구기관 및 정부의 이해를 깊게, 보다 많은 실증활동의 토의의 참가를 구하는 것.

동경에서 이 임무를 끝내면서 위원회 일등은 넓게, 공정하게 그리고 안전한 장래를 구축한다 라는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현실의 가능성은 모두의 나라가 지속적 개발을 이룩하면서 국내정책과 국제능력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또 평가기준을 채용하는 것에 가능성을 걸었다.

지속적 개발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장래세대의 필요성을 해치지 않고 현재세대의 필요성에 만족하는 것과 같은 인류사회의 진보로의 방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서기 2000년을 넘어서 21세기로의 이행을 성공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의 제목적이 이와 같은 대규모적인 변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몇개의 전략을 일치시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UN 환경특별위원회’는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서로 협조하고 또 개개의 노력을 통하여 지속적 개발을 이룩하여 각국 기관의 제 목표에 동참함과 함께 ‘이하’의 원칙을 정책행동의 지침으로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 (1) 성장의 회복

빈곤은 환경악화의 주된 요인이고,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고, 선진공업국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지속적 개발을 위협하는 것도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환경의 자원기반을 증강시키고, 경제성장을 할 필요가 있다. 선진공업국은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긴급행동을 취하는 것, 개발자금의 흐름을 대폭으로 증가시키는 것, 저소득 1차산품 수출국의 외화획득고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 (2) 성장의 질적 변환

성장은 회복되어도 그 성장은 지금까지와는 다르지 않으면 안된다. 즉 지속가능, 공평성, 사회적 정의, 안전성 등을 사회적 목표로 기반에 포함되는 것이다.

안정에서 환경보전형의 Energy-Base는 이 때문에 불가피한 요소이다. 교육, 커뮤니케이션, 국제협력 등은 모두 이들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개발계획자는 나라의 재산을 평가할 때, 거래의 경제지표인 보이지 않는 천연자원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소득의 분배를 개선하고 자연재해나 기술적 리스크를 저감하고, 보건위생의 상황을 개량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전부 성장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 (3) 자원기반의 보전과 강화

지속이 가능한 것은 공기, 물, 산림, 토양 등 환경자원을 보전하고, 유전자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Energy, 물, 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연자원의 1인당 소비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산효율의 개선을 가속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이나 기술로의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나라에 대한 환경규제를 엄정히 시행하고, 새로운 제품·기술·폐기물의 환경영향을 예측하는 것에 의해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요청된다.

### (4) 지속가능한 인구수준의 실현

인구정책의 입안으로서 다른 경제사회개발계획-예를 들면, 교육·보건위생·빈곤자의 생계기반의 확대-등이 ‘적합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가족계획대책을 폭넓게 해 온 것도 사회개발의 한 형식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부, 여성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 (5) 기술방향전환과 리스크 관리

기술은 위험한 한편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도상국의 기술혁신 능력을 대폭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 모든 나라에 있어서 기술개발의 방향이 환경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신기술의 보급에 앞서 그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적 및 국제적 메카니즘의 확립이 필요하다. 동종의 제도는 하천의 수도변경이나 산림벌채 등의 자연생태계의 대폭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환경과 개발의 문제에 관한 정책결정의 과정에는 시민 참여의 확대와 적절한 정보입수의 자유가 촉진되어야만 한다.

### (6) 정책결정에 있어서 環境과 經濟의 統合

환경과 경제는 상호보강해 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책결정의 영향에 대한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책결정자는 그 결정이 자국의 환경자원기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만 한다. 이 경우, 환경파괴의 증상보다는 파괴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환경파괴를 예견하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통상, 에너지, 농업, 그 외의 측면과 동시에 정책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야만 한다.

환경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러한 국내적 및 국제적 기관이 다른 검토사항과 같은 level로 검토되어야만 한다.

### (7) 국제경제관계의 개혁

장기에 걸친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보다 공평하게 환경상의 긴급과제에 대해 通商, 資本, 技術의 흐름을 산출하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 및 통상기반을 다각화시켜 자립성이 강화되는 것을 통하여 도상국이 기회확대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장변화, 기술이전, 국제적 금융면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8) 국제협력의 강화

국제협력에 환경문제의 제요소를 도입하여 문제의 긴급성을 부각시키고, 상호의 이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원의 고갈과 빈곤의 상호작용 문제를 방지하면 그것은 국경을 넘어서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국제개발의 전 분야에 걸쳐서 환경의 감시, 평가, 연구개발, 그리고 자원관리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 그 때문에 모든 나라가 강한 결의를 가져 국제기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통상, 투자 등의 분야에 국제적 Rule을 확립하고, 차례를 지킴과 함께, 국익이 대립하여 조정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대화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그것은 세계평화와의 안전에 의해 본질적 중요성이라는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인류의 진보에는 다국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우리들이 급세기에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전진하게 된다면, 다음 세기에는 전인류에 보다 안전하고 보다 풍요롭고, 공평하고 희망에 찬 미래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위원회는 확신한다.

## Ⅲ. 주요국의 환경선언

### 1. 日本 經團連의 지구환경헌장

#### 前文

日本은 고도의 경제성장에 경험하였던 환경문제와 2차에 걸친 석유위기를 귀중한 교훈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한 지금, 산업공해의 방지나 안전위생,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 자원절약의 면에서 세계 최첨단의 기술 시스템을 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문제는 산업공해의 방지대책으로 볼 때 충분한 해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도시에서의 폐기물 처리문제나 생활폐수에 의한 수질오염문제를 놓고 보아도 도시 구조나 교통체계 등의 개선, 생활기반의 정비나 국민의식이 변혁 등 사회 전체에서의 본격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온난화문제나 열대림이 감소, 사막화, 산성비, 해양오염 등 소위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그 대책이 국민생활이나 경제활동의 모든 국면에 관계된 문제인 점만으로 종합적인 대책, 특히 기술에 의한 break tool이 필요하고, 또 한 나라만의 대책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과제이다.

우리들은 대량 소비문화로 뒷받침되던 '윤택함'의 추구가 불러온 제문제를 다시 살펴, 지구상에 존재하는 빈곤과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적 규모로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건전한 환경을 차세대에 물려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기업, 국민이 자신들의 역할을 인식함과 함께, 국제협력을 통하여 인류복지의 향상과 지구적 규모에서의 환경보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은 일본만의 환경보전의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산업계·학계·관계 모두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자원절약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노력함과 함께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양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환경대책에도 적극적인 참가가 요청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협력을 통하여 과학적인 규명 노력을 계속함은 물론, 가능한 대책부터 곧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문제의 해결에 眞劍으로 대응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로부터의 신뢰와 공감을 얻고, 소비자 또는 사회와의 새로운 공생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도 될 것이다. 경단련은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각 회원에 대하여 행정, 소비자를 필두로 사회 각계각층과의 대화와 상호이해 협력에 아래 이념과 지침에 의거하여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

#### 基本理念

기업의 존재는 그 자체가 지역사회는 물론, 지구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업의 활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전 지구적 규모로 환경보전이 달성되는 미래사회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연계하여 지구적 규모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 기업과 지역주민, 소비자가 상호 신뢰의 바탕을 두고 공생하는 사회, 환경보전을 도모하면서 자유롭고 활력있는 기업활동이 전개되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기업도 세계의 '바람직한 企業市民'이 되는 것을 지향하고 또 환경문제에의 대응이 자신들의 존재와 활동에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行動指針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환경보전형 사회의 실현을 향해서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활동을 경영하기로 한다.

1. 環境問題에 관한 經營方針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서 (1) 전지구적 환경의 보전과 지역 생활환경의 향상, (2) 생태계 및 자원보호에의 배려, (3) 제품 환경보전상의 확보, (4) 종업원 및 시민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 등에 노력한다.

2. 社內體制

(1)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임원의 임명,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조직의 설치 등 사내체제를 정비한다.

(2) 自社 활동에 관계된 환경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준수한다. 뿐만 아니라, 사내규정에 있어서는 環境負荷要因의 삭감 등에 목표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자사의 환경관련 규정 등의 준수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연 1회 이상의 내부감사를 행한다.

3. 環境影響 配慮

(1) 생산시설의 입지를 필두로 하는 사업활동의 전단계에 있어서, 환경에의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하고, 필요한 대책을 실시한다.

(2) 제품 등의 연구개발, 설치단계에 있어서 해당제품 등의 생산, 유통, 적정사용, 폐기의 각 단계에서의 환경부하가 될 수 있는 한 저감되도록 배려한다.

(3) 중앙정부, 지방자치체 등의 환경규제를 준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자체기준을 책정하여 환경보전에 노력한다.

(4) 생산관련 자재 등의 구입에 있어서 환경보전성, 자원보호, 재생산성 등이 우수한 자재 등의 구입에 노력한다.

(5) 산업활동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환경보전성이 우수한 기술을 채용한다. 또 재활용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감소를 도모함과 함께, 환경오염물질의 적절한 관리, 폐기물의 처리를 행한다.

4. 技術개발 등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절약, 자원절약, 환경보전의 동시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서비스를 개발하여, 사회에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5. 技術이전

(1) 환경대책기술, 에너지절약·자원절약 기술, 노하우 등에 대해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적절한 수단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전한다.

(2) 정부개발 원조의 실시에 있어서도 환경·공해대책에 배려하면서 참가한다.

6. 긴급시 대응

(1) 만일, 사회활동상의 사고 및 제품 부적합 등에 의한 환경보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많은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과 함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인력, 기자재 등을 투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自社의 책임이 아닌 대규모의 재해, 환경파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기술 등을 제공하는 등 궁극적으로 대응한다.

7. 홍보·계몽활동

(1) 사업활동상의 환경보전, 생태계 유지, 안전 위생 조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계몽을 행한다.

(2) 공해를 방지하고 에너지절약·자원절약을 달성하기 위해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므로 종업원의 이해를 구한다.

(3) 제품 이용자에 대하여 적절한 사용이나 재 자원화, 폐기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8. 사회와의 공생

(1) 지역환경 보전 등의 활동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종업원의 자주적인 참가를 지원한다.

(2) 사업활동상의 제 문제에 대해서 사회 각층과의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데 노력한다.

9. 해외사업 전개

해외사업의 전개에 있어서는 정당한 '지구환경문제에 대

한 기본입장' (평성 2년 4월)에 지적하였던 10개의 환경배려사항을 준수한다(별첨 참조).

### 10. 환경정책에의 공헌

(1) 행정당국, 국제기관 등에 있어서 환경정책의 수단·방법이 합리적이며 효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활동에 있어서 얻어지는 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함과 함께, 행정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2) 행정당국, 국제기관 등에 있어서 환경정책의 입안이나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서 사업활동 상의 경험을 기초로 합리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 11. 지구온난화 등에의 대응

(1) 지구온난화 문제등에 대해서 그 원인·영향 등에 관한 과학적연구, 각종 대응책의 경제분석 등에 협력한다.

(2) 지구온난화 문제등 과학적으로 미해명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에너지절약이나 자원절약의 면에서 합리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인구문제의 해결 등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환경대책에 민간부문의 역할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별첨)

## 해외진출시의 환경배려사항

### 제정취지

經團連을 비롯한 관계 경제단체는, 일본기업이 1960년대 후반부터 발전도상국에 대한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해외투자 활동을 다면적으로 전개해 오면서 1973년에 수입국에 환영받는 투자와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의 발전과 수입국의 개발·발전이 양립하는 것에 착안하여「發展途上國에서의 투자 행동지침」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후 일본기업의 해외투자가 선진국에서도 다양하게 전개됨을 배경으로 1987년에「해외투자 행동지침」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양지침 모두 환경배려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대상국 사회와의 협조, 융화를 위해 '투자대상국의 생활·자연환경의 보전에 충분히 노력할 것'이라는 한 줄만을 넣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작금 일본기업의 국제적 전개 및 발전도상국의 경제개발에 수반한 공해문제 발생 등에 당하여 상기 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진출기업의 참고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원래부터 개도국에 진출하는 경우 (1) 개도국 정부의 정책적인 면도 있어서 현지기업과의 제휴·併合社로 있는 경우

가 많아, 경영의 주체가 현지 도상국 기업측에 있어 환경보전에의 투자보다 생산설비에의 투자가 우선되었고, (2) 환경규제치는 어느정도의 기술면, 감시조직원에서 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3) 사전에 진출국의 환경현황 관련정보를 입수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도 기초적 데이터가 없거나 입수의 곤란성 등 일본기업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많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진출대상국의 환경보전에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진출기업의 선량한企業市民으로서의 책무이며, 각기업이 이 배려사항을 참고하여 구체적 방침등을 책정할 것을 기대한다.

### 10개의 環境配慮事項

#### 1. 환경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의 명시

진출 대상 사회에서 훌륭한 기업시민이라는 관점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최신의 지식과 적절한 기술에 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함께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후진출대상국 관계자에도 충분히 이해를 얻어내도록 노력할 것.

#### 2. 進出對象國 환경기준 등의 준수와 보다 엄격한 환경보전 노력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환경대책에서는 최소한 진출대상국 환경기준·목표 등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나, 진출대상국의 기준이 일본보다 약한 경우 또는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진출대상국의 자연사회환경을 감안하고 일본 법령이나 대책·실태를 더 고려하여 진출대상국 관계자와도 협의하며 진출대상국 지방상황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

#### 3. 環境影響評價와 사후평가 Feed back

기업진출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행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함과 함께 기업활동 전개 후에도 활동실적과 데이터 등의 축적을 행하며, 필요에 따라서 환경현황의 사후 평가를 행하여 대응책에 만전을 기할 것.

#### 4. 環境關聯技術·Know How 이전 촉진

일본의 앞선 환경관리, 측정 및 분석 등에 관련된 기술·노하우를 진출국에 이전하는 것이 진출대상국 뿐 아니라 지구적 규모에서의 환경보전에 공헌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진출대상국의 관계자와 상담하여 그 기술·노하우의 이전 촉진·정착화에 가능한한 협력을 노력할 것.

#### 5. 환경관리 체제의 정비

일본 기업의 환경배려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나타내고 환

경관리를 적절히 행하기 위해 환경관리 담당 section 및 책임자를 두어 환경관리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 등에 의해 환경관리 체제의 정비를 행함과 함께 환경관리에 관한 인재육성에 노력할 것.

6. 정보의 제공

진출대상 지역사회의 마찰을 피하고 협조 융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출국의 종업원, 주민, 지역사회와의 평상시 교류가 중요하므로 환경대책에 관해서도 적절한 형태의 정보를 흘려주므로써 평상시부터 이해를 얻도록 노력할 것.

7. 환경문제를 둘러싼 분쟁에의 적절한 대응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출대상국 관계자의 협력을 얻어 사회·문화적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학적인 대응방안 수립에 노력할 것.

8. 과학적·합리적인 환경대책에 대한 기업홍보의 추진

진출대상국의 제 활동에는 환경보전대책 추진상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대책에 투자하는 제 활동에는 될 수 있는 한 협력하도록 할 것.

9. 환경배려에 대한 기업홍보의 추진

해외에서 일본 기업활동의 실태가 해외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 않은 현상을 보이므로, 기업은 데이터 등을 제시하여 환경배려에 관한 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보 부족이나 오해에 기인한 비난을 피하도록 노력할 것.

10. 환경배려 노력에 대한 本社の 이해와 지원체제의 정비

일본의 본사 등은 해외에서 기업의 환경배려에 대한 조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기술·정보·전문가의 지원·파견에 의한 사내 지원체제의 정비에 노력할 것.

2. 日本의 자연보호헌장

前文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과 친하자.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자연의 조화를 헤치지 말자.  
 아름다운 자연, 귀한 자연을 자손들에게 전해주자.

憲章

1.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정부·지방공공단체·개인을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임무다.
2. 우수한 자연경관과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은 전 인류를 위해서 적절한 관리하에 보호되어야 한다.

3. 개발은 종합적인 배려하에 신중히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환경보전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4. 자연보호에 대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작하고 가정, 학교, 사회가 각각 자연에 대한 인식과 애정의 육성에 힘쓰고 자연보호의 정신이 몸에 배인 습성이 될 때까지 철저를 기해야 한다.

5. 자연을 손상하든가 파손했을 경우에는 즉시 복원에 힘써야 한다.

6.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환경정화와 녹지대 조성에 힘쓰고 국토전역에 걸쳐서 아름답고 밝은 생활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7. 각종 폐기물의 배출과 약물사용에 의하여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8. 야외에 쓰레기를 버리든가 자연물을 손상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9. 자연환경보전에 있어서는 지구적인 시야에서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3. 美國의 국가환경정책선언(환경정책선언)

제1장 國家環境政策의 선언

제101조(政策 및 目的) (a) 국가는 자연환경의 모든 구성체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간활동의 깊은 관여 특히 인구증가에 의한 깊은 영향과 고도의 정밀한 도시화 내지는 산업팽창, 그리고 자원개발 및 세습고도 확대되어가는 기술의 발전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복리와 발전에 대한 환경의 질적인 회복과 그 보전의 중대성을 인식하면서 일반복리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제반적으로 실질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 인간과 자연이 생산성 있는 조화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조성, 유지하고 미국의 현재와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및 기타의 요구를 충족하게 하는 것이 주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타 이와 관련되는 공적 내지는 사적인 기관과의 협력하에 계속되는 연방정부의 정책임을 선언한다.

(b) 이 법에 규정된 당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것을 그 목표로 하며, 다른 국가정책의 유효한 방안과 일치시키면서 연방정부의 기획, 기능, 계획 및 자원을 개선 및 이를 조정하기 위한 모든 실질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그의 책임으로 한다.

(1) 승계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환경의 수임관리자로서 각 세대의 책임을 가한다.



(2) 모든 미국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이고도 미적이며, 그리고 문화적으로 쾌적한 주변환경을 보존한다.

(3) 저질화하거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타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아니한 결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면서 환경을 광범위하고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

(4)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자연적인 유산을 보존하고, 각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보장되도록 환경을 보존한다.

(5) 생활수준의 고도화 및 생활의 쾌적화의 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인구 및 자원 사용과의 균형을 이룬다.

(6) 갱신이 가능한 자원은 그 질을 높이고, 다 사용된 자원은 그의 최대한의 재활용을 강구한다.

(c) 의회는 각 개인의 건전한 환경을 향유하여야 하고 각 개인의 환경의 보전과 고양에 기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제102조(行政) 의회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정하고 이를 지도한다.

(1) 미합중국의 정책규정 및 공법은 이 법에 규정된 당해 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채택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2)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a)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인간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계획 및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환경디자인예술(*the environmental design art*)를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b) 이 법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심의회(*th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와 협의하여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환경의 쾌적성과 그 가치에 대하여 경제적, 기술적인 배려에 따라 의사결정에 적절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보증하는 일정한 방법과 절차를 확정하고 발전시킨다.

(c) 인간환경에 질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과 기타 중요한 연방의 행위에 관한 일정한 건의 및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책임있는 당국의 세부적인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i) 제안되는 행위의 환경영향
- (ii) 당해 제안이 실시되는 경우의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 있는 불리한 환경영향
- (iii) 제안된 행위에 대한 대안
- (iv) 인간환경의 지역적·단기적인 사용과 장기적인 생산성의 유지 및 증대와와의 관계
- (v) 제안된 행위가 실행되는 경우 그 행위에 포함된 자원의 보존 불가능 및 회복 불가능의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상세한 설명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연방의 담당 공무원은 그 환경영향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각 연방기관과 협의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명서의 사본과 환경기준을 발전시키고 이를 시행할 권한이 있는 연방, 주 및 지방정부의 의견 및 견해의 표시는 미합중국법전 제5장 제55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환경심의회 및 일반공중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당해 제안과 함께 현행기관의 재심절차를 통과하여야 한다.

(d) 주에 대한 보조금지계획에 따라 자금이 공급되는 주요한 연방활동에 대한 명세서로서 1970년 1월 1일 이후에는 제(c)호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일정한 명세서는 다음 각 항목에서 제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기관 또는 주 공무원이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써 이를 법률상 불충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i) 당해 주기관이나 공무원이 이러한 연방활동에 대한 주전역 관할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연방담당공무원이 이러한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지도를 하고 이에 참여한 경우

(iii) 연방담당공무원이 당해 명세서가 승인 및 채택되기 이전에 이를 독자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iv) 1976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방담당공무원이 다른 주 또는 연방토지관리기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이나 그 대안을 이러한 주 또는 연방기관에 신속히 통지하고 그 의견을 구한 경우와, 이러한 영향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명세서에 합철하기 위하여 이러한 영향과 의견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이 항목의 규정에 의한 절차는 명세서의 범위, 목적 및 내용에 관한 연방 공무원의 책임이나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하며 이 항목의 규정은 주전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 주기관이 작성한 명세서의 법적 충족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e)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미국의 대외정책과 일치할 때에는 인류의 세계환경의 질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간 협력을 최대화 하는데 대한 우선권, 결정 및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지원한다.

(f) 주(*states*), 군(*counties*), 시(*municipalities*), 공공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환경의 질을 회복하고 이를 보존하며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유용한 조건 및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g) 자원이향적 프로젝트(*resource-oriented projects*)를 수립하고 이를 개발시키는데 있어서 생태학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다.

(h) 이 법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질심의회를 지원한다.

제103조(정책의 檢討)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은 이 법의 목적 및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어떠한 결함이나 모순이 없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재 법령상의 권한 및 행정규칙 그리고 현행 정책 및 절차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1971년 7월 1일까지 대통령에게 당해 권한 및 정책이 이 법에서 정한 취지, 목적 및 절차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104조(同前) 이 법 제102조 또는 제103조의 규정은 어떠

한 방법으로든지 다음과 같은 일정한 연방기관의 특정한 법정 의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일정한 환경질의 기준 또는 평가

(2) 다른 연방기관 또는 주 기관과의 조정 및 협의

(3) 다른 연방기관 또는 주 기관의 권고 및 인가를 조건으로 하는 일정한 행위의 실행 및 이의 중지

제105조(同前) 이 법에 규정된 당해 정책 및 목적은 현행 연방기관의 권한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책 및 목적을 보충한 것이다. ♪

■ 생활건강 ■

# 스트레스 퇴치법

## 하루 2번 기분좋은 상상을

미국의 월간 글레머지는 최근호에서 스트레스 해소법을 소개하고 있다.

▲매일 두번정도 15분씩 긴장을 해소한다=긴장을 푸는 법은 몸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 우선 편안하게 앉거나 눕는다. 잡념을 버리고 5분간 호흡을 조절한다. 한 손을 가슴 아래에 대고 횡경막의 오르내림을 느껴가면서 정신을 집중시킨다. 약 5분간 각 근육을 3~4차례씩 반복해 이완·수축시킨다. 이마·볼·턱에서 시작해 발끝에서 그친다. 마지막 5분간 자신을 해변의 벤치나 숲속의 흔들의자 등 쾌적한 상상의 장소로 인도한다. 선택된 장면의 경관이나 소리·냄새 등으로 감흥을 불러 일으키면서 긴장을 풀고 즐거움의 세계로 빠져든다.

▲매주 3회 30분씩 에어로빅 운동을 한다=에어

로빅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면서 기분을 좋게해 문제 해결능력을 높인다.

▲식습관을 바로 잡는다=사람들이 불안하거나 긴장하게 되면 지방이 많거나 단 음식을 많이 먹고 카페인 음료나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식습관은 비만으로 연결돼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 과일·야채·곡류와 함께 저지방 요구르트와 우유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몸의 증상은 대개 질병이나 신체기능 저하에서 오는 수가 많다. 새로운 증세가 나타나거나 불편한 느낌이 오래 지속되면 스트레스라고 단정하기 전에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